

#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일 시 : 2008. 9. 23.(화) 10:30 ~ 13:30

장 소 : 대전유성호텔(8층 스타볼룸)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지방토론회 주제논문집

#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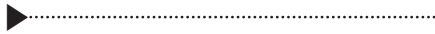
일 시 : 2008. 9. 23.(화) 10:30 ~ 13:30

장 소 : 대전유성호텔(8층 스타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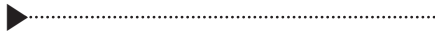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 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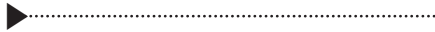
## 토론회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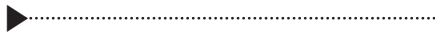
10:30 ~ 10:40      **개회사 및 국민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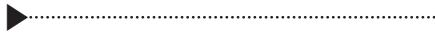
10:40 ~ 11:30      **주제발표**  
언론 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발 표 - 남 재 일 위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11:30 ~ 12:30      **종합토론**  
사 회 - 황 성 주 위원(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2:30 ~ 13:30      **오찬 및 간담**



주제논문

#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남 재 일 위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목 차

I. 들어가는 말 .....	1
II. 피해사례의 발생 배경과 취재관행 .....	3
1. 오보의 개념과 발생원인 .....	3
2. 오보의 유형별 원인과 취재관행 .....	6
1) 취재망의 구조적 성격과 오보 .....	6
2) 상업주의 경쟁과 오보 .....	7
3) 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취재관행의 전유와 오보 .....	8
4) 개별 기자의 실수 및 자질부족과 오보 .....	9
III. 언론분쟁의 유형별 쟁점과 취재관행의 문제점 .....	10
1.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 .....	10
2.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의 추이 .....	11
1) 조정·중재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 추이 .....	12
2) 언론소송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 추이 .....	13
3. 침해 유형으로 본 언론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	14
1) 명예훼손 .....	14
(1) 성립조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	15
(2) 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	15
① 피해자 특정 .....	15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16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	17
④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	17
2) 초상권 침해 .....	19
IV. 맺는 말 .....	20

#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언론분쟁은 언론사와 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분쟁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헌법 21조는 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건의 조정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했을 때 절충점을 찾는 것이 요체이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해보면 언론의 자유에 실려 있던 무게중심이 점점 인격권의 보장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유(혹은 표현의 자유)는 17세기 사상가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식화 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밀턴은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고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했다. 밀턴의 사상은 당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19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언론의 사회적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제한적 자유’로 보는 시각이 정착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결정적 계기는 19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언론의 기업화이다. 밀턴이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던 당시는 기업화된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했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치권력으로 가정되던 때이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일반시민의 언론자유를 강조했다기 때문에 ‘무제한적 자유’를 상정해도 별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희박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언론은 자본주의 기업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는 언론기업의 영업할 자유를 의미하게 되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했다. 20세기 초 풀리처와 허스트가 이끌던 미국의 황색저널리즘은 기업화 된 언론에게 무제한적 자유를 부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상업성은 필연적으로 선정성과 속보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언론의 ‘제한적 자유’는 언론의 상업화와 맞물려 언론자유를 규정하는 지배적 틀로 자리 잡았다.

언론의 상업화가 앞서 진행됐던 미국 언론은 ‘제한적 자유’에 적응하는 속도도 빨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자유를 최대화 하기위한 미국 언론의 노력은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의 정착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의 전문직업인주의는 언론 기업의 상업적 요구와 시민사회의 공익성에 대한 요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충시키고자 하는 직업적 이념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주의는 취재관행을 통해 구체화 되고, 언론윤리 강령이나 보도준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기자집단 내부와 시민사회에) 고지된다. 갠즈(Gans, 1980)는 전문직업인주의를 기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한 준이데올로기(paraideology)로 봤고, 터크만(Tuchman, 1978)은 보다 초점을 좁혀 기자들의 취재관행을 소송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 명명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언론기업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한다면, 기업의 상업적 요구와 공익성을 절충시키는 전문직업인주의의 확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 특수한 저널리즘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자들이 소송을 회피하는 것은 공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업적 손실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사회적 폐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언론은 ‘제한적 자유’라는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해

온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미국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화가 진행됐다. 한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기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60년대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때부터 87년 민주화까지 거의 30년을 언론은 정권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특혜 속에서 기업적 성장을 이룩했다. 때문에 한국 언론은 기업화 수준에 맞는 취재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심각한 지체를 겪게 됐다. 정치적 통제를 자제하는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준 박정권의 언론정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탈정치적 사건중심 보도 관행을 정착시켰다. 탈정치적 사건중심보도 관행은 사회현상을 사건중심으로 단순 기술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외면하는 관행이다. 이 관행 하에서 요구되는 보도기술은 매우 단순하다. 이 상태로 언론은 87년 민주화를 맞게 됐고, 이후 급속히 성장한 시민사회의 이의제기에 직면해 있다. 언론분쟁의 증가는 변화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재관행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언론현장에서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개정의 핵심은 과거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있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언론의 상업성에 손상을 주는 지경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취재관행의 정착은 언론의 상업성을 유지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문직업인주의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최근의 언론분쟁에 자주 나타나는 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관련된 취재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기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취재행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피해사례의 발생 배경과 취재관행

### 1. 오보의 개념과 발생원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오보에서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오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보도, 사실을 과장한 과장보도, 사실을 왜곡한 왜곡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보도 등을 포괄한다. 정걸진(2008)은 오보를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규범적 정의는 바람직한 보도를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시범위가 모호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다 지시범위가 분명하게 조작적 정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도”, “어떤 형태든 피해를 준 보도”로 초점을 좁혀 보았다.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보연구는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원인과 기자들의 행위 수준에서 비롯된 원인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임병국(1990)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과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나누었다.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마감시간과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을 꼽았고,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오청, 오인과 같은 기자의 지각과정의 실수, 기자의 선입견, 편견, 조급성과 같은 심리적 결함, 기자의 경험미숙과 전문지식의 결핍 등을 들었다. 노광선(1995)은 오보의 원인을 기사작성 과정의 오기 또는 실수, 확인 소홀, 일방의견보도, 전문성결여 등과 같은 기자 개인에 의한 오보발생과 상업주의의 지나친 경쟁, 지나친 외신의존, 뉴스취재원의 실수나 부주의,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나누었다. 정걸진(2008)도 오보 발생의 원인을 기자의 개인적 미숙함과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내외적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기자의 미숙성은 기자의 취재활동에서 실수뿐만 아니라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편집과정에서의 확인 소홀 등을 꼽았다. 또 이와 달리 기자 개인에게 귀책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구조적 요인으로서는 마감시간의 존재와 상업주의 경쟁, 광고주의 압력, 권력의 간섭,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을 꼽았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요인과 정보 수집 및 전달과정에서 기자개인의 자질 문제로 양분하는 것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추론하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기자 개인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에 적응한 결과이고, 기자들의 개별취재 행위도 취재관행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귀

책사유를 개별 기자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의 확인 소홀도 그 기저에는 속보경쟁의 일상적 작업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와 그레이(Lawrence & Grey, 1964)가 오보 발생의 6가지 원인-보도자료의 배경부족, 데스크의 편집관행, 보도의 드라마화 및 과대강조욕구, 뉴스 정보원과의 접촉부족, 부주의, 시간적 제약-으로 지목한 사항을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이 구조와 행위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보도자료의 배경부족은 구조적 요인에 속하지만 기자의 추가취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자들은 취재원이 공신력이 있을 경우 오보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추가취재에 따르는 시간의 지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원인은 결과적으로 구조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데스크의 편집관행은 정형화된 뉴스가치 기준 적용,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정형화된 기사작성 구조의 요구, 마감시간 압박, 기사의 재미(선정성)에 대한 요구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관행도 구조적 요인이지만 데스크 개인의 욕심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사안, 즉 행위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항목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의 원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으로 유형화 하는 것은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기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리느냐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느냐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언론분쟁에서 이 문제는 허위사실을 취재과정에서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느냐는 판단, 즉 '상당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 판단에서 '상당성'에 대한 인정은 오보의 원인이 행위차원의 문제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하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현실적 인정을 의미한다. 즉 모든 오보발생 원인은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이지만, 취재현실을 기준으로 행위차원에서 기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취재노력이 없을 때 귀책사유를 구조적 문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발생의 원인에 대한 유형화가 귀책사유를 평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이 결합하는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필자의 능력 밖이고, 이 글의 논의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구조적 차원에서 행위적 차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정도

에 따라 순서대로 오보발생의 원인 혹은 배경을 재배치해 해보고자 한다.

## 2. 오보의 유형별 원인과 취재관행

### 1) 취재망의 구조적 성격과 오보

뉴스매체는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취재망을 구축하고 있다. 취재망은 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리적 공간과 영역을 커버하면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재망은 ‘공간적 분할’과 ‘전문영역적 분할’로 구성됐다.(Tuchman, 1978)

‘공간적 분할’은 지리적 공간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각 관할구역(beat)에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등이 주로 이 방식으로 조직된다. ‘전문영역적 분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담당하는 전문분야를 경계로 취재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언론은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취재망을 구성한다.

이 취재망 안에서 실질적인 취재는 출입처 취재와 현장취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입처는 정보가 집결되는 정보의 병목이다. 현장은 뉴스 사안이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이다. 이상적인 취재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교차되는 것이지만, 대개의 취재는 보다 효율적인 출입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처 취재는 효율적인 반면 중간에 취재원을 매개해서 정보를 얻는 단점이 있다. 즉 정보를 얻는 경로가 현장관찰이 아닌 취재원 인터뷰(타인의 입을 통해 정보를 얻는 모든 취재행위)에 의존하게 돼 있다. 여기서 오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 취재원 자체의 잘못된 정보 습득, 전달과정의 기자의 실수 및 곡해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오보의 귀책사유를 일차적으로 구조적 차원으로 돌릴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은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과 취재원 자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다. 즉 고의든 실수든 취재원이 원 정보 자체를 잘못 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취재원이 국가기구나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 등의 공식발표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행위적 차원의 책임이 면책된다. 나머지 경우, 고위공무원이라도 공식발표가 아닌 경우, 사회저명인사라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개인적 취재원은 사실 확인의 책임이 기자에게 있기 때문

에 행위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 2) 상업주의 경쟁과 오보

오보의 발생원인 중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상업주의 경쟁이다. 언론의 상업주의 경쟁은 크게 속보성 경쟁과 선정성 경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감시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상업주의 경쟁의 산물이라기보다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뉴스생산 공정의 구조적 장치이다. 하지만 마감시간을 당겨서 경쟁매체와 속보성을 다투는 형태로 상업주의와 연관된다. 언론산업의 속성 중 속보성은 광범위하게 뉴스 생산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기자들이 ‘말뚝(peg)으로 부르는 뉴스가치 적합성 판정 틀(한국 기자들은 일본어인 ‘야마’를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정형화된 역피라미드 구조의 기사쓰기 등이 ‘신속-정확’이라는 형용모순을 실천하기 위한 편집관행이다. 뉴스 적합성 판정틀은 빨리 뉴스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이며, 역피라미드 구조는 정보를 빨리 기사로 작성하고 빨리 편집하기 용이한 기사틀 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안을 틀에 맞춰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싶은 사실만 보는 인식의 편향성을 유발, 기사의 전체적 의미를 왜곡하는, 즉 ‘주관적 오보’<sup>1)</sup>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속보성이 오보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 오보’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오보’는 날짜, 시간, 장소 등 기사에 표기되는 파편적 사실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관적 오보는 행위 차원의 잘못이지만 많은 기자들은 ‘속보성’을 상황적 요인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오보 발생의 기저에는 속보성이라는 구조적 차원이 있지만 속보성이 기자의 잘못을 정당화 할 만큼 직접적인 경우는 드물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즉 사실 확인을 위한 물리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오보의 구조적 차원의 요인으로 속보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고 긴급해야지, 상업주의 경쟁의 관점에서 긴급한

---

1) 베리(berry)는 오보를 날짜, 시간, 장소 등 개별적인 사실에 관한 오보를 ‘객관적 오보’, 지나친 강조나 의미의 축소, 생략, 과장, 부적절한 제목에 의한 오보를 ‘주관적 오보’로 나누었다. 객관적 오보는 정확성의 실패, 주관적 오보는 사실성(혹은 진실성)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것은 내부사정일 뿐이다. 상당성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기자가 생각하는 ‘필연성’ 과 ‘긴급성’은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객관적 오보’는 기자들의 행위차원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상업주의 경쟁의 또 다른 형태는 선정성이다. 선정성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기자들의 편집관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사를 흥미 있게 만드는 과정의 과장, 왜곡, 생략 등과 같은 논리적·수사학적 오류’로 볼 수 있다. 저널리즘 글쓰기 교재에 나오는 ‘심각한 내용을 재미있게(현장에서는 섹시하게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라는 표어는 저널리즘의 속성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선정성을 통한 상업주의 경쟁은 ‘보도의 극화’, ‘주관적 가치 판단 과잉의 리드 남발’, ‘경마식 보도’, ‘외설적 소재의 남용’ 등과 같은 형태의 부정적 편집관행을 불러온다. 하지만 보도의 선정성 자체는 오보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기사가치를 높이려는 기자의 욕심이 직접적 원인이 된다.

### 3) 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취재관행의 전유와 오보

취재관행은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기자들의 작업방식이다. 이런 의미의 취재관행은 언론사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즉 기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업적 관습으로 언론윤리강령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취재관행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개별기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2차적으로 형성되는 ‘부정적 양태’의 취재관행들이 있다. 낙종을 피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자들의 경쟁적 취재가 가져다주는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세함으로써 오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회사의 특종과 속보의 요구를 현장기자들이 카르텔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속보경쟁의 고단함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언론산업의 속성 때문에 생긴 속보경쟁의 구조적 관행을 기자들의 행위차원의 관행으로 전유하는 전형적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출입처 취재제도에 의존해서 출입처의 발표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발표 저널리즘’도 기

자집단의 편의를 위해 출입처 제도를 전유한 '부정적 양태'에 해당한다. 한 기자의 기사를 여러명이 동시에 제공받는 기사 풀(pool)제도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현장기자들이 노동력을 아끼려는 편익적 취재관행이다. 이러한 유형의 취재관행은 취재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의 절차에 대한 경쟁을 없앴으로써 오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 4) 개별기자의 실수 및 자질부족과 오보

오보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오보 발생의 원인이 구조적 차원과 직접적 관계없이 기자의 행위차원의 문제로 귀인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기자의 실수, 심리적 편견, 취재경험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기자의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자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숫자나 이름 등의 오기와 같은 '객관적 오보'로 오보의 계기가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은 주로 일방적 주장이나 불분명하고 미심쩍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서 오보를 일으키는 경우로, 사실 확인의 필요는 느끼지만 추가적인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오보의 유형은 '주관적 오보'가 많다. '심리적 편견'은 사안에 대해 일방향적 시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한 측면만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로 역시 '주관적 오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취재경험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은 보다 막연하고 포괄적인 원인으로 경험이나 지식부족으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다양한 형태의 '주관적 오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sup>2)</sup>

이렇게 보면, 오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자는 취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으며, 사실 확인에 성실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도 사람인 이상 이런 조건을 늘 갖추기는 어렵다. 리프만(Walter Lippman)은 기자가 객관적 전달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

2) 이 문제는 기자의 전문성과 관계된다. 기자의 전문성은 취재 및 기사작성의 기능적 숙련, 담당영역에 대한 전문적 식견,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 3가지 요소를 요건으로 한다.

말은 다분히 역설적으로 기자는 완전한 객관적 전달자로서의 사회적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구조적 차원의 원인이 아닌 행위차원의 오보 원인에 대해서는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언론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오보의 유형을 취재관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사의 사실이 허위인 경우, 사실은 맞지만 공표해서 안 될 사실을 공표한 경우, 사실도 맞고 공표해도 되는 사실이지만 표현이 잘못된 경우의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자가 노력해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 종종 있기 때문에 행위차원의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나 사생활 관련 사실의 공표가 대부분인 두 번째 경우는 기자가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알고 노력하면 행위 차원에서 극복이 가능하다. 주로 제목의 과장이나 해석상의 과도한 주관개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 번째의 경우는 기초적인 선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자제 노력과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근절이 가능한 경우이다.

행위차원의 오보 원인을 줄이려면 먼저 허용되는 언론자유와 법의 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언론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과 언론소송 사건에 나타나는 언론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관행에서 보완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Ⅲ. 언론분쟁의 유형별 쟁점과 취재관행의 문제점

#### 1.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민·형사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법정 기구에 의해 언론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언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겪지 않고도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언론사와 언론피해자 양자에게 모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긍정적 평가는 언론중재과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언론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제도의 존재가 어느 정도는 언론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양삼승, 2000) 부정적 평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언론피해자의 구제를 오히려 지연시키고(김창룡, 2004 ; 장호순, 2003),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언론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김중서, 1994)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 견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자체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매우 유용하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사법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아 소송의 현실적 장벽이 높고 언론사의 취재관행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언론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신청사건은 2003년 724건, 2004년, 759건, 2005년 883건, 2006년 1087건, 2007년 1043건으로 대체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피해구제율은 2007년 6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2.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의 추이

언론분쟁 쟁점의 효율적 인식을 위해 먼저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에 나타난 개괄적인 언론분쟁의 추이를 큰 틀에서 그려보고자 한다. 2007년 조정·중재 사건 1043건과 2005년-2007년 3년간 다루어진 언론소송사건 349건을 각각 분석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 분석 보고서 '2007년도 조정·중재 사건 분석 보고서'와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 취재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조정·중재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 추이

2007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1043건으로 5년 전의 724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증가추세는 2006년-2007년 사이 44건의 감소추세를 처음으로 보였는데, 중재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절대적인 청구건수의 감소라기보다는 병합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청구권별 청구건수는 정정보도 52.8%, 손해배상 33.5%, 반론보도 11.0%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병합청구의 경우도 '정정·손배'가 232건으로 전체 병합청구건수 277건의 83.8%를 차지했다. 단독이든 병합이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압도적이며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 신청인 유형별 건수는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이다. 개인의 비율이 2005년 43.6%에서 50.3%로 크게 늘어난 반면 국가기관은 16.5%에서 9.7%로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참여정부기간 중 정부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 매체유형별 건수는 신문이 60.8%(중앙일간지 26.6%, 지역일간지 21.6%, 주간신문 12.5%), 방송 24.0%, 인터넷 신문 10.8%, 뉴스통신 2.9%, 잡지 1.0% 순이다. 신문은 2005년 69.0%에서 60.8%로 줄어든 반면 방송은 19.7%에서 24.0%로 늘어났고, 인터넷 신문은 5.4%에서 10.8%로 2배가 증가했다. 인터넷 신문의 청구건수 증가가 폭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신문 기자들의 언론윤리법규 인식 수준이나 직업적 숙련도가 인쇄매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91.4%로 압도적이며 초상권침해가 5.1%로 그 다음 순이다.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신용훼손 등은 1% 안팎으로 극히 미미하다. 초상권등 기타 인격권의 침해 유형은 '동의 없이 무단 공표' 77.3%,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2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는 사건사고/고발 기사가 61.8%, 정치/선거 관련 기사가 8.9%, 경제/산업 관련기사 6.5%, 교육 3.4%, 노조 3.0% 이고 나머지 분야는 매우 낮았다. 기사의 유형(방송제외)은 스트레이트기사가 75.2%, 탐사/심층/기획 기사 8.8%, 논단 및 칼럼 3.3%, 비평 2.6%, 사설 2.0%, 사진 2.1% 순이다.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는 뉴스가 62.4%, 시사고발 22.0%, 교양정보

9.6%순이고 오락프로나 스포츠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를 기각, 각하건수를 제외한 조정건수로 나눈 것)은 64.8%로 전년대비 4.2%p 상승했다.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가 80.8%, 반론보도 71.8%, 정정보도청구 63.7%, 손해배상청구 63.1%이다.

## 2) 언론소송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 추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이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에 나타나는 언론분쟁의 추이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몇몇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를 중심으로 2005년-2007년 언론소송 사건 369건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했다.

- 청구별 소송빈도는 손해배상청구가 54.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29.3%, 반론보도청구 5.1%, 정정보도청구 3.8% 등이었다. 조정사건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절반을 넘는데 비해 소송의 경우는 순수 정정보도청구는 3.8%로 미미하며 대부분이 손해배상청구(병합청구포함)인 것이 특징이다. 피해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기대치가 높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 침해유형별 소송빈도는 명예훼손이 78.6%로 단연 많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5.4%,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5.2%, 명예훼손/사생활침해/초상권 침해 3.3% 순으로 거의 모든 소송이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이다. 초상권침해 단독은 1.9%, 사생활 침해 단독은 0.5%에 불과하다.
- 매체유형별 소송빈도는 방송이 29.8%, 일간신문이 27.9%, 인터넷매체도 19.0%, 주간신문 10.3%, 월간지 8.1%, 뉴스통신 4.1%였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71.8%,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78.2%로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조정사건에 비해 방송의 비율이 높고 신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중에서 지역신문의 비율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영향력 있는 매체에 의한 피해가 피해범위와 정도가 클 것이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한 욕구도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신문에서 소송빈도가 낮은 것은 좁은 지역에서 여론분쟁이후의 관계를 생각해 극단적인 방식을 서로 피하려고 하는 성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 보도유형별 소송빈도는 조정 사건과 큰 차이가 없다. 스트레이트의 비율이 79.8%에 이르고 방송의 경우도 뉴스, 시사고발,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 재판결과는 원고 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은 43.4%, 원고 패소율은 56.1%로 집계됐다.

- 청구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반론보도가 47.8%로 가장 높고, 손해배상이 43.4%, 기사삭제 33.3%, 배포 및 방송금지 가처분이 25.0%, 정정보도가 23.4%였다. 정정보도의 원고 패소율이 75.8%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또한 손해배상과 병합 청구된 경우 별도의 정정보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도 많았다.
-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명예훼손이 전체평균과 같은 43.4%, 명예훼손과 초상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57.9%, 초상권 단독침해는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재관행 중 초상권의 이용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인 55.9%, 공직자 51.9%, 국가기관 38.5%, 언론사는 36.0%, 종교단체는 30.0%, 공적 인물과 기업체는 26.1%, 기타일반단체 22.2% 순으로 나타났다. 원고유형에 대한 재판부의 일반적 입장은 공인과 언론사는 일반 개인에 비해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뉴스통신매체도 66.6%로 높다. 이어 월간지 46.7%, 인터넷매체 45.7%, 방송 44.5%, 일간신문 28.2%순이었다. 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은 지역종합일간지 41.2%, 중앙종합일간지 25.7%, 일반경제지 25.0% 순이었다. 피고인 대상매체의 승소율이 낮을수록 그 매체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격적이고 비판적 내용이 적어 속성상 소송이나 패소의 비율이 낮은 경제지를 제외하면, 중앙종합일간지의 보도관행이 그나마 '법의 테두리'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침해 유형으로 본 언론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법적 보장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다. 그래서 언론분쟁의 쟁점은 결국은 소송사건의 판결 기준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싸움은 일차적으로는 소송 대상 보도가 인격권 침해의 법적 구성요건이 되는지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차적으로는 인격권을 침해했다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 법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에 중요한 취재관행의 행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명예훼손

## (1) 성립조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은 보도내용 중 기사의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본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진위 검증이 가능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의 범위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우회적으로 암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없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부분은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다. 허위일 경우가 대체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년 7.15일 선고)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인 경우이고,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기구나 언론사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언론자유가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① 피해자 특정 : 언론은 익명처리 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에 나타나는 다른 단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게 된 경우이다. 분쟁의 쟁점은 기

사에 표시된 단서들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공표되는 효과를 갖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김 아무개’, ‘A회사’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를 익명처리 했는데 기사 중의 다른 단서들 때문에 피해자 특징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둘째, ‘해당 전교조 34명’ 등과 같이 복수의 집단으로 표현했는데 기사의 내용과 당시 정황 때문에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주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이다.

셋째, “검찰의 불법감청 의혹”, “경찰의 카드깡” 등 집단표시를 했을 뿐인데 기사 정황으로 보아 담당수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피해자 특징이 인정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집단표시 자체만으로는 구성원의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 특징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인정된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기자가 침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이다. 개인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익명화 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집단인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구체적 사실의 적시** : 이 요건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의견 표명이 단순한 의견개진이었는지 인신공격이었는지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 직접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된다. (검찰의 불법도청 의혹사건에서 문제의 사실은 ‘의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견 표명의 형식을 취했지만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됐다.)
- **의견표명과 인신공격** :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는 기사 중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연결된 의견표명이 많다. 즉 사실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 의견이 피해자에 불리한 기사가 많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면 문제가 된 논평부분은 주관이 강하게 개입돼 있더라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 제시된 인사 내용을 기초로 한 논평

인데 인사내용이 사실이고 여기에서 추론한 것으로 인정돼 의견 표명으로 간주된 경우이다. “유령조합”, “알박기식 가처분”, “몰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노골적으로 제 뺨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등의 표현도 의견개진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하지만 의견 또는 논평이 한계를 일탈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표명 자체로도 불법행위(모욕죄)가 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특정 개인을 향해 사용한 “분열적 정신상태”란 표현, 모 국회의원이 오마이뉴스를 비판하며 사용한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인용과 사실의 적시** : 제 3자의 저술이나, 강연, 인터뷰 내용 등을 기사화 하는 경우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인용해서 전체 취지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로 인정된다. 조선일보가 “MBC 미디어 비평 프로는 위함-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진중권의 발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 이 요건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를 판정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 않느냐는 기자의 판단은 동시대의 통념과 상식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특허청 업무처리 잘못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방송에서 원하지 않은 이혼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

이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재관행은 피의사실 보도관행이다. 속보경쟁을 하느라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마치 범죄혐의를 받은 사실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 어투로 보도하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④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적 관심사를 공익을 위해 보도했느냐 여부, 보도사실이 진실이냐 여부, 진실이 아닐 경우 상당성의 인정 여부 등이다.

- **공적인물 판단기준** : 공인 여부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의 수용한도, 익명보도의 원칙의 적용, 초상권이용 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인(公人)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고 정황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를 보면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 아니다.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 ‘국회의원’, ‘청와대비서관을 지낸 법무부차관’은 공인이다.

- **보도의 공익성** : 이 항목 역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례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최근 5년간 1,455,000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보도, 방송사 대표이사가 방송사를 정치적 홍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거론한 보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유층 인사들을 고발하는 보도, 국회의원의 욕설보도 등이다. 공익성이 부정되는 경우 중 유의해야 할 것은 ‘피의사실 보도에서 피의자가 공적인물이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는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공인이어도 공익적 사안과 직접 관계된 사실이 아닌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경계 판단이 쉽지 않아 자주 오인되는 경우이다.
- **진실성 및 상당성** : 보도내용의 진실성 판정 원칙은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은 조각되는데, 상당성 판정은 기자가 진실을 알기 위한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거쳤느냐가 관건이다. 상당성 판정에서는 취재원의 공신력, 기자의 사실 확인 가능성, 실제 사실 확인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한국 언론의 취재관행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성 판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사기관이 배부한 보도자료를 받고 자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나온 내부문서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내부문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내부 경찰관에게 확인했다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고소장과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강연내용을 보도한 경우 취재기자가 강연내용을 메모한 정도의 조사절차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라고 볼 수 없고, 발언의 신뢰성,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강연자에게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보도했을 경우 연합뉴스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게재한 매체역시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게재 매체의 경우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북한관련 뉴스 등과 같이 당사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취재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그 자체로 상당성이 인정된다.
  - 검찰간부의 제보를 받고 원고의 수위사실을 보도한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취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 판례에 나타난 이러한 세부기준을 보면 상당성 판정은 우선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공공기관의 공식적 발표냐 아니면 비공식적 채널의 제보냐가 중요한데, 후자의 경우 아무리 높은 자리의 취재원이라도 개인적 제보를 공식발표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당사자 확인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반론권을 인정해서 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성을 인정받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상권 침해는 주로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거나 동의했다라도 동의의 범위 이상 이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상권 침해의 분쟁의 주요 쟁점은 동意的 판단 근거, 동意的 범위 규정,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의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연성과 긴급성 여부 등이다. 판례를 통해 추론한 쟁점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변조된 경우 초상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모자이크 처리가 불확실해 식별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인정된다.
- 원고의 동의는 초상권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뒷받침돼야 하며 정황적인 근거로 묵시적 동의를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한 것은 송년회를 주최한 측의 촬영협조가 있었다 해도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하겠다고 하고 실제 방영에서 얼굴이 노출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 공적인물의 초상 사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공익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 아닌

사람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 필연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고 기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부분은 묵시적 동의 여부와 공익적 내용에서 긴급성과 필연성이라 할 수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묵시적 동의와 긴급성 및 필연성에 대해 관대한 해석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필연성과 긴급성은 반드시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해야 할 이유인데, 사실 웬만한 보도 내용은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해도 내용 전달은 된다. 다만 현실감과 박진감이 떨어질 뿐이다. 현실감과 박진감은 공익성과 관계되기보다 상업성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상업적 욕구를 절제하면 충분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 IV. 맺는 말

언론분쟁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자들의 행위 차원에서 비롯되며, 노력을 통해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기자들의 자각과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취재관행의 문제로 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론분쟁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안이며, 주로 사건사고, 탐사보도, 폭로성 고발기사 등에 집중된다. 이 분야의 기사가 주로 공격저널리즘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데, 기자들은 연조가 비교적 낮은 기자로 취재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이다. 인력배치에서부터 언론분쟁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허위 사실의 보도는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방향으로 사물을 재단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보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면 상당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저하게 취약하다.

셋째, 상당수 언론분쟁이 제목을 비롯한 기사 본문 중의 과장된 표현 때문에 비롯된

다.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타인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언론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자 재교육을 통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약간의 기자 재교육과 기자들의 현장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론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언론분쟁이 증가하고 언론사의 취재관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기자 경험으로 보면, 그 원인은 편집국(혹은 보도국)의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언론은 현장기자의 오보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특히 주관적 오보에 대해 관대하다. 객관적 오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관적 오보이다. 객관적 오보는 기자의 실수가 많다. 그러나 주관적 오보는 기자의 나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편이고, 짧은 속보를 많이 쓰는 사건중심보도 편집관행에서 물리적 시간이 많이 드는 전체적 사실의 확인보다는 당장 드러난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하자는 전략적 동기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사실 확인 절차에 대해서 당위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는 기자들이 '정확성'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게 유리하다. 즉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이 요구하는 사실만 충족되면 이 사실들의 파편적 정확성을 지키는데 주력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들이 인용의 방식이 전체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법의 테두리'를 인식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다. '상당성'에 대한 개념을 취재과정에서 떠올려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익적 내용의 보도에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때 긴급성과 필연성을 따져보기를 바라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언론이 사건중심보도 관행을 탈피해 점점 해설과 내러티브 중심으로 기사체를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과 감정 개입의 폭도 이전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사가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취재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재 및 기사작성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의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기자 개개인이 오보가 속보성 때문이 아니라 행위차원의 부주의와 나태 때문에 생긴다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준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재과정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편집국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취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사 생산의 스케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조직적 차원의 변화를 통한 취재관행의 혁신이 없으면 언론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중서(1994), 정정보도 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 5집』, 서울: 헌법재판소
- 김창룡(2004),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부산토론회 주제논문집」
- 노광선(1995),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양삼승(2000),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2000.11.23 대전) 자료집.
- 임병국(1990), 신문오보의 실태와 정정, 『오보와 정정』 한국언론연구원, pp. 167-382
- 장호순(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간법 개정과 언론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세미나(2003. 08. 28, 속초) 자료집.
- 정걸진(2008),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언론중재위원회 대구토론회 주제논문집」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연차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조정·중재 사건 분석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 Berry, F. C. Jr(1967), A Study Of Accuracy in Local News Stories in Thre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Autumn, pp.480-492.
- Gans H. J(1980),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Y.:Vintage Books
- Lawrence G. L & David R. Grey(1964), Subjective Inaccuracies in Local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Winter, pp.753-757.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Y.:Free Press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할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

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

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절 소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

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

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